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공 | 기 관 의 장 |
| 람 | |

공 보

제 957 호 2015. 7. 13. (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19호[하천 접용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20호[도로명주소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2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22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627호[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8

공 고

안
내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회
람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6 행정712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119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호계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장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토지구획정리지구 93B2L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 설치 (전력 공급용 전주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호계동 936-1번지
나. 면적
- 일시 : 4m²
- 영구 : 1m²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가. 일시 : 착공일로부터 1일간
나. 영구 : 2015. 7. 13.~2019.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120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5길 17-5(호계동)외 19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별지 참조)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7.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순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부여시유 고시일 | 도로명 비고 |
|----|---------------------------|-------------------------|--------------|--|------------|
| 1 |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7B 4L |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길 17-5(호계동) | 2015-07-13 | 수동마을명칭사용하여서도로명부여를하였다. | 2013-12-30 |
| 2 | 울산광역시 북구 회봉동 971-7 |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2길 18(회봉동) | 2015-07-13 | 통신마을과술법마을을한하여시청이라불리어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1-05 |
| 3 | 울산광역시 북구 회봉동 971-23 |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2길 16(회봉동) | 2015-07-13 | 통신마을과술법마을을한하여사청이라불리어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1-05 |
| 4 | 울산광역시 북구 회봉동 971-24 |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3길 11(회봉동) | 2015-07-13 | 통신마을과술법마을을한하여사청이라불리어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1-05 |
| 5 | 울산광역시 북구 회봉동 971-25 |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5길 8(회봉동) | 2015-07-13 | 통신마을과술법마을을한하여시청이라불리어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1-05 |
| 6 | 울산광역시 북구 당시동 532-1 |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당시동) | 2015-07-13 | 이름마을시임이진행중인국에위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8-09 |
| 7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면촌지구 21B 9L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6길 1(진장동) | 2015-07-13 | 옛지명이미한지도사용하는이름으로울산시민이면누구나친숙한이름으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12-07 |
| 8 | 울산광역시 북구 회봉동 434-12 |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9길 16(회봉동) | 2015-07-13 | 사람이사는단지를말하는지역이며회봉지역의대표적인옛지명이라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1-05 |
| 9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74-1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5(호계동) | 2015-07-13 | 호계사장에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 2004-08-09 |
| 10 | 울산광역시 북구 종산동 1268-1 | 울산광역시 북구 종산산업3길 11(종산동) | 2015-07-13 | 종산산업단지내부도로리하이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15-02-02 |
| 11 | 울산광역시 북구 경동산하자구 45B 7L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증정1로 24(산하동) | 2015-07-13 | 산하지구증정을시나는도로라는의미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14-05-07 |
| 12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면촌지구 58-1B 5L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1(진장동) | 2015-07-13 | 옛지명이미한지도사용하는이름으로울산시민이면누구나친숙한이름으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12-27 |
| 13 | 울산광역시 북구 충산지구 13B 2L | 울산광역시 북구 충산길 19-7(충산동) | 2015-07-13 | 법정동명칭사용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13-12-30 |
| 14 | 울산광역시 북구 충산지구 9B 12L | 울산광역시 북구 충산4길 10(충산동) | 2015-07-13 | 법정동명칭사용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13-12-30 |
| 15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24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길 145(신명동) | 2015-07-13 | 기존지연마을인신명마을이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8-09 |
| 16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25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길 143(신명동) | 2015-07-13 | 기존지연마을인신명마을이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8-09 |
| 17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26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길 141(신명동) | 2015-07-13 | 기존지연마을인신명마을이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8-09 |
| 18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27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길 139(신명동) | 2015-07-13 | 기존지연마을인신명마을이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8-09 |
| 19 | 울산광역시 북구 청평동 499-1, 500-3 | 울산광역시 북구 차밀1길 46(청평동) | 2015-07-13 | 기존지연마을인차밀마을이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8-09 |
| 20 | 울산광역시 북구 당시동 333-1 |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928(당시동) | 2015-07-13 | 이지역의원에따라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9-08-2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12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멀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3길 11(화봉동)외 1건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폐지 사유 |
|---------|-----------|-------|
| (별지 참조)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7. 13.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 번호 | 도로명주소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폐지사유 | 비고 |
|----|-----------------------|--------------------|--------------|--------|----|
| 1 | 울산광역시 북구 사성3길 11(화봉동)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971-7 | 2015-07-13 | 건축물 멀실 | |
| 2 | 울산광역시 북구 사성5길 10(화봉동)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971-7 | 2015-07-13 | 건축물 멀실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122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2로 38-15(호계동)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호계5길 99 | 호수2로 38-15 | 2015. 7. 13 | 호수구를 지나는 도로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7.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5 - 627호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43조 등에 의거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허용기준의 고시 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5. 7.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대상 문화재 : 시지정 문화재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외 13개소(붙임 참조)

2. 허용기준 작성 목적

- 가. 「문화재보호법」 제13조4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나.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 하고
- 다.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 행정의 투명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제고

3. 인·허가 절차

- 가. 허용기준 이내 건설공사 : 문화체육과 협의 후 즉시처리
- 나. 허용기준 초과 건설공사 : 울산광역시에 현상변경 허가 득하여 시행

4. 공고기간 : 2015. 7. 8. ~2015. 7. 22.(15일간)

5. 의견제출 및 접수(의견서양식 붙임 참조)

- 가.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람, 도면 열람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문화체육과(☎052-241-7333)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대상 시지정 문화재

- 2.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3.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대상 시지정문화재

| 연번 | 지정별 | | 문화재명 | 소재지 | 지정일 | 보호구역 (m ²) |
|----|-------|-------|--------------|------------------|------------|---------------------------|
| | 구분 | 번호 | | | | |
| 1 | 기념물 | 유형문화재 | 6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 어물동 산122 일원 | '97.10.09. | 13,258 |
| 2 | | 9 | 중산동 고분군 | 중산동 616-1 일원 | '97.10.09 | 21,381 |
| 3 | | 13 | 우가산 유포봉수대 | 당사동 산171, 230 일원 | '98.10.19 | 8,262 |
| 4 | | 30 | 상안동 지석묘 | 상안동 223-1 일원 | '00.12.09. | 1,055.6 |
| 5 | | 31 | 창평동 지석묘군 | 창평동 7, 산45-2 | '00.12.09. | 2,124.1 |
| 6 | | 38 | 곽암 | 강동동 판지마을 해수면 | '01.12.20 | 503 |
| 7 | | 40 | 달천천장 | 달천동 1-7 일원 | '03.04.24 | 68,292.5 |
| 8 | | 41 | 중산동 취락유적 | 중산동 656-1 일원 | '03.04.24 | 15,663 |
| 9 | | 42 | 강동 화암 주상절리 | 산하동 952-1 일원 | '03.04.24 | 7,681.6 |
| 10 | | 44 | 대안동 쇠부리터 | 대안동 산177 | '06.01.23 | 1,660.8 |
| 11 | | 45 | 매곡동 생활유적 | 매곡동 351-10 | '07.11.22 | 21,120 |
| 12 | 문화재자료 | 5 | 박상진의사 생가 | 송정동 355 | '97.10.09. | 2,245 |
| 13 | | 9 | 신흥사 구 대웅전 | 대안동 739 | '98.10.19. | 5,196.9 |

[붙임 2]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14개소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연번 | 지 정 별 | | 문화재명 | 구 역 | 비 고 |
|----|-----------|----|------------|--|-----|
| | 구 분 | 번호 | | | |
| 1 | 유형문화재 | 6 | 이풀동 마애여래좌상 | I 구역, II 구역 | |
| 2 | | 9 | 중산동 고분군 | I 구역, II 구역 | |
| 3 | | 13 | 우가산 유포봉수대 | I 구역, II 구역, III 구역, IV 구역, IV-1 구역 | |
| 4 | | 30 | 상안동 지석묘 | I 구역, II 구역, IV 구역 | |
| 5 | | 31 | 창평동 지석묘군 | I 구역, II 구역, | |
| 6 | | 38 | 곽암 | I 구역, II 구역 | |
| 7 | | 40 | 달천철장 | I 구역, IV 구역 | |
| 8 | | 41 | 중산동 쥐락유적 | I 구역, II 구역 | |
| 9 | | 42 | 강동 화암 주상절리 | I 구역, II 구역, IV 구역 | |
| 10 | | 44 | 대안동 쇠부리터 | I 구역, II 구역 | |
| 11 | | 45 | 매곡동 생활유적 | I 구역, II 구역, III 구역 | |
| 12 | 문화재 자료 | 5 | 박상진의사 생가 | IV 구역 | |
| 13 | | 9 | 신흥사 구 대웅전 | I 구역, II 구역 | |

○ 구역에 따른 허용 기준

| 구 分 | 허 용 기 준 | 공 통 사 항 |
|--------|--|--|
| 제1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지형 보존 ○ 신축불가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보수, 개축, 재축은 기준규모, 기준위치 내에서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지역(보호구역포함)은 시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 공익을 위한 공공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
| 제2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이하의 신축, 증축, 개축 허용 ○ 평슬라브:8m이하, 경사지붕(3/10 이상) : 12m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연면적, 최고 높이 범위이내에서 개축·재축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한다. |
| 제3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층 이하의 신축, 증축, 개축 허용 ○ 평슬라브 : 15m이하, 경사지붕(3/10이상) : 20m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연면적, 최고 높이 범위이내에서 개축·재축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과도한 절·성토을 금지한다. |
| 제4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
| 제4-1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라 처리 | |

[붙임 3]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

의 견 제 출 서

문 화 재 명

성명(명칭)

의견자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

집전화 :

의 견

울산광역시 북구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